

의안번호	2212696
의 퇴 인	곽규택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9.
추 계 번호	24B3592

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(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)	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인구·산업·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.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수요 예측 3.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경제성·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. 기존 취수시설의 수질현황 분석 및 그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 5. 복류수·강변여과수 등 취수시설의 수질현황 분석 및 그 유역의 수질관리대책 6. 복류수·강변여과수 등 취수시설 설치 예정지역 및 장애물 7.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개략적인 관로노선 및 취수시설 등의 배치계획 8. 공사 내용,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9.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10.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11. 환경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12. 지진 대책 13. 그 밖에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10조(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)	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, 사업 구역, 사업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/재량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2조(영향지역 지원사업)	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향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(이하 “영향지역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향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5	안 제13조(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)	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향지역지원기금(이하 “지역지원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의한 지역지원기금의 재원은 제21조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함(제2항)	의무규정
6	안 제14조(지역지원 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)	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함(제2항) 1.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물정책을 담당하는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 2. 대체상수원 지역의 시장·군수, 주민대표 3. 수해지역의 수도사업자 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위원회의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7	안 제15조(영향지역 수질개선)	환경부장관 또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시·도지사는 영향지역을 「수도법」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·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,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(제2항) 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, 사업재원은 제21조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9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함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16조(영향지역 정비사업)	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는 취수원 개발기간에 영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비사업(이하 “지역정비사업”)을 시행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9	안 제17조(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)	제16조의 따른 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일취수시설용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(제1항) 1. 취수량 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0만세제곱미터 미만 : 200억원 이하 2. 취수량 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 : 300억원 이하 3. 취수량 일 30만세제곱미터 이상 : 400억원 이하 제1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은 제9조의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90을 부담하고,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·군수가 100분의 10을 부담함(제2항) 제2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10	안 제18조(추진단의 설립·운영)	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(제3항)	재량규정
11	안 제20조(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)	수혜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영향지역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대체상수원 지역의 농산물 구매,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이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12	안 제23조(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)	환경부장관과 광역·기초자치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안 제5조)

-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

□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8조)

- 환경부에 따르면,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「물관리기본법」과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¹⁾으로,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9,822백만원이 편성되어, 하류(부산-경남)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(2022.12.~2023. 12.)되었으나, 상류(대구-경북, 울산) 지역은 지방자치단체(대구·구미) 간 의견 불일치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가 보류되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
-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이 종료된 하류 지역을 제외하고, 상류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1)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(일반회계, 5033-356)

- 환경부에 따르면, 기존(2022년) 추진 중이었던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상류 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17억원이었으나, 현재 검토 중인 ‘맑은 물 하이웨이’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류지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43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
- $[17\text{억원(기존 기본계획 수립 예산)} \times 1\text{조 } 8,503\text{억원(변경 총사업비)}] / 7,364\text{억원(기존 총사업비)} = 43\text{억원}$

[표 1]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경과

- ('21.6월)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, 낙동강유역위원회 심의 의결
→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(부산-경남, 대구-구미, 울산권)
- ('22.04) 대구-구미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 체결
- ('22.06)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
- ('22.08) 대구시에서 구미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상정협정 파기 통보
- ('23.12) 대구시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, 환경부에 공식 제안
- ('24.1~7) 대구시 건의(안), 환경부 기술검토 연구용역 진행
 - 대구시는 안동댐에서 63.5만톤/일(1.8조) 취수 요구 → 환경부 기술검토 결과 적정 취수량은 46만톤/일로 확인

자료: 환경부

[표 2]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(상류) 계획 비교

구분	기존(예타)	‘맑은 물 하이웨이’ 사업 (환경부 기술검토 연구용역)
총사업비	7,346억원	1조 8,503억원 (잠정)
취수지역	구미 해평 취수장	안동댐 직하류
취 수 량	30만톤/일	46만톤/일
급수지역	대구(28.2만톤/일), 성주(1만톤/일), 고령(0.8만톤/일)	대구(40.9만톤/일), 신공항(3.3만톤/일), 성주(1만톤/일), 고령(0.8만톤/일)
관로길이	45km	약 110km

자료: 환경부

□ 실시계획 수립(안 제10조)

- 환경부에 따르면, 하류(부산-경남)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공사비를 2조 2,653억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건설요율²⁾ 및 동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(30%)을 적용하여 실시설계비가 24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, 2024년 예산으로 19억 2,000만원을 확보하였음
 - 22,653억원(기본계획 공사비) × 3.63% × 30%(국비) = 247억원

[표 3]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(하류)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(2023.12.) 결과
(단위: 억원)

구 분	사업비
총사업비	27,957
1. 공사비	22,653
2. 보상비	577
3. 시설부대경비	2,186
4. 예비비	2,542

자료: 환경부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규모, 내용, 사업 구역, 사업 기간 등을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경우, 상류(대구-경북, 울산) 지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실시계획의 바탕이 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 - 환경부에 따르면 ‘맑은 물 하이웨이’ 사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류 지역 실시설계비가 130억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
 - [1조 1,977억원(기술검토 연구용역 공사비) × 3.63% × 30%(국비)] = 130억원

2)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약(안) 작성 세부지침 건설요율 적용

□ 영향지역 지원사업 및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(안 제12조 및 제13조)

- 환경부에 따르면, 영향지역³⁾ 지원사업은 취수지역과 수혜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, 수혜지역의 일시지원금, 국비(필요시) 등을 바탕으로 취수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, 상·하류 모두 취수지역(대구-부산)과 수혜지역(안동-의령·창녕·함천) 간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 재정소요추계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(안 제14조)

-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역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
□ 제15조(영향지역 수질개선)

-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영향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수질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수질개선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
□ 영향지역 정비사업 및 재원(안 제16조 및 제17조)

- 제정안에 따라 영향지역 관할 시장·군수는 취수원 개발기간에 영향지역의

3) 제정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“영향지역”이란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, 강변 여과수 및 복류수 등의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영향지역의 범위와 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

□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단의 설립·운영(안 제18조)

- 제정안에 따라 추진단을 설립·운영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추진단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추진단의 규모, 업무,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
□ 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(안 제20조)

- 수혜지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영향지역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농산물 구매,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상생발전 노력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

□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(안 제23조)

- 제정안에 따른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낙동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낙동강유역 취수원다변화사업 경과⁴⁾

□ 사업 경과

- (기존사업) 낙동강은 다른 강보다 수질오염도가 높아 주민 불안 지속 → '28년까지 취수원 다변화로 먹는 물 불안 해소('21.6, 낙동강유역특 의결)
 - (상류) 구미 해평취수장 추가 취수 → 대구28.2만톤·경북1.8만톤 매일 공급
 - (하류) 창녕·합천 강변여과·복류수 개발 → 부산42만톤·경남48만톤 매일 공급
- (여건변화) 상·하류 모두 진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일부 변경
 - (상류) '22년 대구-구미 간 이전 → 대구시는 안동댐 물을 직접 취수하는 '맑은 물 하이웨이' 정부 공식 제안*('23.11)
 - * 환경부 기술 타당성 검토 실시('24.1~7)

[표] 기존 상류 사업계획과 맑은 물 하이웨이(안) 비교

구분	기존 사업계획	환경부(안, 맑은 물 하이웨이 반영)
취수지역	■ 구미 해평 취수장	■ 안동댐 (직하류 700m)
취 수 량	■ 30만톤/일	■ 46만톤/일
급수지역	■ 대구(28.2만톤/일), 성주(1만톤/일), 고령(0.8만톤/일)	■ 대구(40.9만톤/일), 신공항(3.3만톤/일), 성주(1만톤/일), 고령(0.8만톤/일)
관로길이	■ 45km	■ 약 110km
사 업 비	■ 0.7조 원	■ 약 1.9조 원(울산권 포함)

- (하류) 농업피해(지하수위 저하) 및 입지규제 우려로 지역주민 반대

[표] 기존 하류 사업계획과 환경부 대안 비교

구분	기존 사업계획	환경부 대안
취수지역	■ 창녕(강변여과수), 합천(복류수)	■ 창녕·의령(강변여과수), 합천(복류수)
취 수 량	■ 90만톤/일 - 창녕 45만톤/일, 합천 45만톤/일	■ 90만톤/일 - 창녕 47만톤/일, 의령 24만톤/일, 합천 19만톤/일
취수지점	■ 3개소(강변여과수), 1개소(복류수)	■ 8개소(강변여과수), 1개소(복류수)
지하수위	■ 최대 7m 저하	■ 최대 3m 저하
급수지역	■ 부산(42만톤/일), 창원(31만톤/일), 김해(10만톤/일), 양산(6만톤/일), 함안(1만톤/일)	
사 업 비	■ 약 1.8조원	■ 약 2.8조원(잠정)

4) 환경부 제출자료

[참고자료 2] (상류) 기존 사업계획 대비 맑은 물 하이웨이(안)⁵⁾



5) 환경부 제출자료

[참고자료 3] (하류) 기존 사업계획⁶⁾



구분	영향 지역 (취수·정수)	수혜 지역 (물 공급)
상류	- 구미 해평 취수장 30만m³/일 - 경북 청도 운문댐(여유 물량)	⇒ 대구 28.2만m³/일 공급(기타 지역 1.8만m³/일) ⇒ 울산시(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한 수량)
하류	- 합천 황강 하류 복류수 45만m³/일 +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 45만m³/일	⇒ 동부 경남 48만m³/일, 부산 42만m³/일 공급

6) 환경부 제출자료